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3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7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행위 가중처벌(권영세·민형배의원안)	4
2. 마약투약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규정(민형배의원안)	14

I. 개요

1.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6.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2.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8.
- (3) 회 부 일 : 2024.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으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풍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풍당마약’을 근절

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행위 가중처벌(권영세·민형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대상 마약류의 범위와 법정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 권영세의원안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각각 가중처벌함(안 제58조부터 제61조).
- 민형배의원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현 행	권영세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제58조(벌칙) ①·② (생략) <u><신 설></u>	제5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u>	

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 략) 제60조(벌칙) ① (생 략)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제61조(벌칙) ① (생 략)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u> <u><신 설></u> <u><신 설></u>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가중-----. 1.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 2. <u>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 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 2. <u>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 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u>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

③ (생략)	<u>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u> 를 범한 자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최근 청소년 대상의 시음 행사에서 마약류가 혼합된 약물을 건강 음료로 속여 마시게 한 후 부모로부터 금전 갈취를 시도하는 범죄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고¹⁾,

술이나 음료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하여 이를 마시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상대방에게 강간·사기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²⁾.

□ 마약류의 강제 투약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범죄와 같은 2차 피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투약은 자기 투약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마약류의 불법 투약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1)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23050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결과

2)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 다만,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법정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개정안이 규율하는 대상 마약류의 범위와 법정형의 수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권영세의원안 제58조제3항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투약·제공하는 경우에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와 동일함³⁾.
- 민형배의원안 제59조제3항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상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상해치사죄, 유기·체포·감금 등의 치사죄, 인질강요죄, 강도죄, 인질강도죄 등이 있음⁴⁾.

3)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또한, 음료 등에 투입되는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 범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⁵⁾,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마약에 한정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두 개정안의 처벌 요건 및 처벌 수준 비교 >

처벌 요건		처벌 수준		
		현행	권영세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제58조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8조의2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하거나 흡연·섭취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9조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사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제3조제5호 위반)			
제60조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사용,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⁶⁾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제3조제1호 위반)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제61조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5) 음료에 몰래 투입되어 범죄에 활용되는 약물 종류인 GHB, 필로폰, 줄피뎀 등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

<범죄유형 단속 현황 (단위: 명)>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6	1,235	7,904	3,081	10,899	1,859	2,627	27,611
점유율(%)	(0.0)	(4.5)	(28.6)	(11.2)	(39.5)	(6.7)	(9.5)	(100)
대마	0	236	1,057	129	1,936	342	385	4,085
마약	0	74	250	2,952	335	141	218	3,970
향정	6	925	6,597	0	8,628	1,376	2,024	19,556

*자료: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제공

□ 아울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데, 실무상 마약류를 투약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고⁷⁾, 이는 이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법체계적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벌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현행법에서는 주로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권영세의원안의 일부 조문에서는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권영세의원안 제58조의2제3항에서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흡연·섭취하기 위하여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6) 권영세의원안은 제60조제2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민형배의원안은 제5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7)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2017도3196판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법 제59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에는 “투약·제공”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각각 인용하는 권영세 의원안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2호에서는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새로운 구성요건이 창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만을 규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③ 현행법상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59조제1항제5호와 제60조제1항제1호가 있는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법정형을 규율하고 있고, 실무상 법정형이 더 중한 제59조제1항제5호로만 처벌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한 채 법정형 가중만을 규정하고 있어 함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8).

< 개정안 내용 중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항 >

현행법 벌칙 규정	권영세의원안	비고
(제58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 투약·제공 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 투약·제공 한 자	(안 제58조제3항)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7호의 행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에 해당
(제58조의2제1항)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 하거나 대마 또는	(안 제58조의2제3항)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행위(흡연·섭취하게 하거나 흡연·섭취하기)	①에 해당

8) 현행법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3조제5호” 위반이고, 제6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 위반으로 법문언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3조제1호는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위반행위의 실질이 사실상 중복됨.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법 벌칙 규정	권영세의원안	비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하여 제공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 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행위를 한 자	(안 제59조제3항)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체계적으로 부합 (정비 불필요)
(제59조제1항제5호)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 사용 ·관리한 자		③ 향정(가목) 법정형 ② 사용만 규정
(제60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안 제60조제2항제2호)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	③ 향정(가목) 법정형 ② 사용만 규정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 관리, 조제, 투약, 제공 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①에 해당
(제61조제1항제5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 관리, 조제, 투약, 제공 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안 제61조제2항제2호)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항제5호의 죄(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범한 자	①에 해당

-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제공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⁹⁾」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등을 투약·제공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법무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법정형의 수준 등 가중처벌의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권영세의원안 제59조제3항에서 인용하는 제59조제1항 제5호에는 “투약, 제공”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안 제59조 제3항에서 “투약,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율함으로써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새로운 구성요건이 창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만 규정하는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함.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1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7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7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626)

2. 마약투약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규정(민형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민형배의원안 제40조의4는 타인투약 범죄로 인해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이하 “마약투약피해자”라고 함)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민형배의원안
<신설>	<u>제40조의4(마약투약피해자의 치료보호)</u>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9조제3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약류 검출 여부를 판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40조제4항에 따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9호10)에 따르면,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의미함.
- 따라서, 마약투약피해자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40조제2항11)에 근거하여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중독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개정안은 중독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마약투약피해자의 경우에도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재활**” 위주의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지원까지 담당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치료보호 제도와 별개로 마약투약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아울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¹²⁾」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과 구조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마약투약피해자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상 치료보호 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약투약피해자 중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마약류 투약 피해자의 규모 파악을 통한 치료보호비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	-------------------------------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0쪽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1쪽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삼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지청)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중앙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4쪽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1쪽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4쪽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

